

## 대전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1
----------	-----

제출년월일 : '96. 6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 1. 제안이유

1996년 2월 21일 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노인복지계가 신설되어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 회계관리 담당자에 대한 관직을 지정 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기금운용관을 가정복지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을 노인복지계장으로 정함.(안 제8조)

### 3. 참고사항

- 타 시도 비교표(별첨)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 대전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중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를 “기금운용관은 가정복지국장,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계장으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조표

현행	개정안
<p>제8조(회계관리) ① 기금은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p> <p>② (생략)</p>	<p>제8조(회계관리) ① - - - - - - - - - - 위하여 기금 운용관은 가정복지국장,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계장으로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각시도 노인복지기금 회계관리책임자지정 비교표

시도별	회계책임자지정		비고
	기금운용관 (기금출납명령관)	기금출납원	
서울특별시	담당과장	담당계장	
광주광역시	가정복지국장	가정복지계장	
대구광역시	가정복지국장	노인복지계장	- 분임운용관 : 가정복지과장
충청남도	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계장	
인천광역시	가정복지국장		- 분임운용관 : 대한 노인회 인천광역시 연합회장 - 분임지출원 : 대한 노인회 인천광역시 연합회 사무국장
전라남도	가정복지국장	노인복지계장	- 분임운용관 : 가정복지과장

大田廣域市老人福祉基金設置及運用管理條中例改正條例案

# 審 查 報 告 書

1996年 6月 17日

文 教 社 會 委 員 會

大田廣域市老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審 查 報 告

1996. 6. 17.  
文教社會委員會

### I. 審查經過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1996. 6. 5 대전광역시장
2. 회 부 일 자 : 1996년 6월 5일
3. 상 정 일 자 : 제52회 대전광역시 의회 (임사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1996. 6. 17)  
상정, 심사, 의결

### II. 提案說明 要旨 (提案說明 : 家庭福祉局長)

#### 1. 提案理由

1996년 2월 21일 직제규칙이 개정됨에따라 노인복지계가 신설되어 노인복지 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중 회계관리 담당자에 대한 관 직을 지정하려는 것임.

#### 2. 主要骨子

기금운용관을 가정복지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을 노인복지계장으로 정함. (안 제8조)

### Ⅲ.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 김진호)

- 본 개정안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을 적립하고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1994년 4월 18일 조례 제 3268호로 제정되어 그동안 2차에 걸쳐 개정된 조례로
- 금번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1996년 2월 21일 규칙 제2044호로 시직제규칙이 개정되어 가정복지과에 노인복지계가 신설됨에따라 본조례 제8조(회계관리) 제1항중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노인복지 업무담당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된것을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금운영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기금운영관을 가정복지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을 노인복지계장으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Ⅳ. 討 論 要 旨 : 省 略

Ⅴ. 質 疑 및 答 辯 要 旨 : 省 略

Ⅵ. 審 查 結 果 : 原 案 可 決

Ⅶ. 其 他 必 要 的 事 項 : 없 음